

2025년  
고용장려금  
사업주 설명회



#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

## 고용창출

### 고용창출장려금

- ✓ 일자리 함께하기 `24년 폐지
- ✓ 국내복귀기업 `24년 폐지
- ✓ 신증년 적합직무 `24년 폐지
- ✓ 고용촉진장려금

### 청년 고용장려금

- ✓ 청년내일채움공제 `24년 폐지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고령자 고용장려금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 고령자 고용지원금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고용안정

### 고용안정장려금

- ✓ 정규직 전환 지원금 `24년 폐지
-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 워라밸실근로시간단축지원 `24년 신설
-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및운영비 지원
-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비 지원

## 고용유지

### 고용유지지원금

-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1.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 사업개요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 ① 단축제도 도입(취업규칙 또는 규정 마련)
- ② 근속기간 6개월(주 35시간 이상 근무)
- ③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④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25년부터 '임신'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시 '②근속 6개월', '④전자·기계적 방식' 폐지



## 지원금액

지원 인원 1인당 간접노무비 월30만원 정액+임금보전금액 월20만원 정액

## 2.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 - '24년 신설

### 지원내용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및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사업주가 **실 근로시간**을 단축 한 경우 지원

\***실근로시간**: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지원대상

기존 실근로시간 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 지원

### 지원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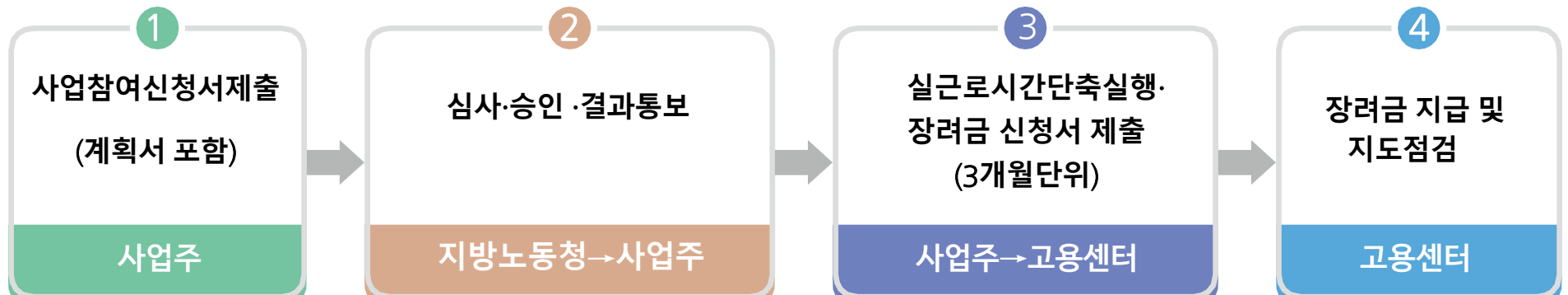
1.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수립
2. (실근로시간 감소)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직전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3. (근태관리)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지원금액

지원 인원 1인당 단축장려금 월 30만원 정액, 최대 1년 지원

### 지원방식

**공모형(심사형)**



### 3.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선택 근무제	재택 근무제	원격 근무제	시차출퇴근(육아기)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1일 근로 시간을 결정하는 제도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b>주거지에 업무공간</b> 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b>원격근무용 사무실</b> 에서 근무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b>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b> 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b>출퇴근시간을 조정</b> 하는 제도

#### 지원요건

-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 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40시간      ③ 근로계약서 변경
  - ④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퇴근시각 관리 및 근태관리 기준 준수
- ※(선택근무제의 경우) 정산기간 평균 주당 연장근로 12시간 이하,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지원내용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육아기(만12세또는 초등 6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 원격, 선택근무는 2배 지원(1년 최대 720만원)**

유형	1개월지급액			최대지급액
	월4일~7일활용	월8일~11일 활용	월12일이상 활용	
재택·원격근무	15만원	20만원	30만원	360만원(1년간)
시차출퇴근 (육아기)		20만원	40만원	480만원(1년간)
선택근무	30만원			360만원(1년간)

##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1)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구분		1개월 지급액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이내	월30만원
	(3개월 이상 부여) 첫 3개월	월200만원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초과	월30만원

※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사업장별 남성1번~3번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지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월 30만원, 인센티브\* 부여 시 월 40만원

\*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부여한 사업주에게 1~3번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우선지원 대상기업만 해당)

■ '육아휴직지원금'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최대지원기간 : 2년

(3)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월 120만원 (지급임금의 80% 한도, 인수인계기간(최대2개월) 월120만원으로 동일, 육아휴직 대체는 첫3개월 지원제외)

(4) 업무분담지원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으로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임금을 추가지급한 사업주

→ 월 20만원 (추가지급한 임금 한도, 다른 지원금 중복지원시 제외)

## 5.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도달 근로자 대상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한 기업을 지원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알림마당([www.mme.or.kr](http://www.mme.or.kr))에서 확인)

**지원요건** 정년을 운영중인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1년 이상 고용연장

**(기업요건)**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 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 ① 정년을 연장(정년연장)
- ②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 ③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거나 6개월 이내 재고용(재고용)

**(근로자요건)**

- ①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는 자가
- ②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함에도
- ③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고용을 연장

\*다만, 다음의 사람은 제외

- ① 해당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②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③ 월 평균 보수가 최저보수('23년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

**지원수준 및 기간** 정년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최대 **3년간 월 30만원** ('23년까지는 2년간 지원)  
(해당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최대 30명 한도)

## 6. 고령자 고용지원금



### 사업개요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의 은퇴 희망 연령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이 증가한 기업을 지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알림마당\(www.mme.or.kr\)](http://www.mme.or.kr)에서 확인

\* 지원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중대산업재해발생등으로 명단공표중인사업주

### 지원요건

#### 기업요건

- ① 사업 가동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② 60세이상 월 평균 근로자 수가 이전 3년간 월 평균보다 증가할 것

(월 평균 근로자 수) 신청 분기 내 매월말 현재 만 60세인 근로자로서  
-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초과 되었거나  
- 신청분기에 신규채용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1년초과하여 계약한 사람  
(23.6.30.까지 채용자에 한해 적용)

### 지원수준 및 기간

증가 고령자수 1인당 분기 30만원씩 2년간지원

(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한도, 최대30명한도)



## 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I 유형, II유형) ☆ '25년부터 II유형 신설

### 사업개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 및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 장려금을 지원

### 지원대상 기업

#### I 유형

사업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1인~4인 기업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가능

- |             |            |
|-------------|------------|
| ① 지식서비스산업   | ② 문화콘텐츠산업  |
|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 ④ 청년창업기업   |
| ⑤ 미래유망기업    | ⑥ 지역주력산업   |
| ⑦ 고용위기지역 기업 | ⑧ 특별고용지원업종 |

#### II 유형

기준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 빈일자리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 '제조업' 모두와  
'빈일자리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

※ 신규성립하여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성립 이후 기간 평균으로 계산 (신규 성립한 달에는 참여신청 불가)

※ 법인의 지사(지점)는 본사(본점)에서 통합 신청이 원칙

→ (25년부터) 장소분리, 고용보험 구분, 지사에서 관리 가능한 경우 사업장(지사) 단위로 신청 가능

## 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I 유형, II 유형)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현재 만 15세~34세 이하의 실업 상태인 청년

유형별 요건

I 유형

- ①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일용근로내역,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실업기간으로 산정)
- ②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3학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고졸 예정자 포함)
-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취업희망프로그램,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 ④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미래내일일경험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 수행 사업)
- ⑥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⑦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⑧ 북한이탈 청년
- ⑨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⑩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대학 졸업예정자, 휴학생은 지원제외)

II 유형

5인 이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고,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청년

## 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I 유형, II 유형)

### 지원제외 기업



#### 매출요건 미달

연 매출액이  
[기준피보험자수  
X 1,900만원]  
미만인 기업

#### 소비, 향락

유흥업, 주점업,  
무도장, 숙박업,  
청소년유해업소  
등

#### 국가, 공공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출연·출자,  
초·중·고교

#### 재정지원기관

인건비 등 대부분  
운영예산을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  
해 운영되는 기관

#### 간접고용

인력공급업  
경비경호업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부정수급처분  
고용보험체납

### 지원제외 청년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

사업주(대표자)  
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고교, 대학재학중  
▶ 방송통신, 야간대학  
등은 가능

외국인 제외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가능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청년이 소비  
향락업 등  
업무를 수행

관련사업주  
1년 이내 동일 사업주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주로부터  
전직

취업중인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동 사업장에서  
프리랜서3개월이상  
근무중인 자

## 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I 유형, II 유형)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구분		`24년	`25년	
			I 유형	II 유형
지원기간		2년	1년	2년
최소 고용유지 기간		6개월	6개월	기업 6개월, 청년18개월
지원 금액	기업	1인당 최대 1,200만원 (월 60만원×12개월) (2년 근속시 480만원)	1인당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12개월)	1인당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12개월)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	-	<b>청년 직접지원 480만원</b> (1회차)18개월 240만원 (2회차)24개월 240만원

### 신청 기한

- ✓ **기업**: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된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 ☆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경과시 남은 장려금 소멸
- ✓ **청년**: 채용일로부터 18개월이 종료된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회차 인센티브(240만원),  
24개월이 종료된 익월부터 2개월 이내 2회차 인센티브(240만원)을 신청해야 함
  - ☆ 채용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로부터 2개월 경과시 남은 장려금 소멸

## 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Ⅰ 유형, Ⅱ 유형)

### 유의 사항



### 1. 2025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신규 채용하여 주30시간 근무하여야 함

- ✓ 정규직이되 3개월 이내의 수습(시용) 기간을 정한 경우 **최초 정규직 채용일**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 인턴 등 **기간제(계약직)**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한 경우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함

### 2.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12.31.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함

- ✓ 다만,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 시 다른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
- ✓ 참여신청일과 승인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3.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간 인위적 감원(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 감원방지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 ✓ 감원방지 기간: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전환) 후 **1년간** 감원 제한
- ✓ 고용조정 제한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내** 고용조정 발생시 : 지원금 **일체** 부지급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후 1년 이내** 고용조정 발생시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까지만 **월할** 지원
- ✓ 고용조정 제한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 3개월 이내** 채용된 청년은 **지원 제외**

## 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I 유형, II 유형)

### 참여신청 방법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참여신청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신규채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역구분 광주(제주) 검색  
→ 원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work24.go.kr. The browser address bar displays 'work24.go.kr'. The navigation menu includes '개인' (Personal) and '기업' (Business), with '기업' circled in red. Below the menu, there are links for '로그인' (Login), '회원가입' (Sign Up), '이용안내' (Usage Guide), '질문과 답변' (Q&A), and '원격지원' (Remote Support), with '로그인' circled in red. The main navigation bar features the '고용24' logo and links for '채용지원' (Job Support), '직업 능력 개발' (Career Development), '기업지원금' (Business Support), and '확인 및 신고' (Check and Report), along with a search icon and '전체메뉴' (Full Menu).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are buttons for '개인회원' (Personal Member) and '기업회원' (Business Member), with '기업회원' circled in red. A section for business member login includes radio buttons for '일반사업자' (General Business), '사무대행기관' (Agency), '대리인' (Agent), and '훈련기관' (Training Institution), with '일반사업자' selected. Below these buttons, it says '기업회원 로그인입니다.' (Business Member Login) and '일반사업자/사무대행기관/대리인 선택 후 우측의 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세요.' (After selecting General Business/Agency/Agent, please log in with the certificate on the right). To the right, there are two cards: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Business Common Certificate) and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Business Financial Certificate), both with right-pointing arrows.

## 8.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란?

기업의 **구인 어려움** 유형별로 채용지원부터 고용여건 개선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

###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 적합한 구직자가 지원하지 않아 신속한 채용지원이 필요한 기업
- ✓ 근로조건,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컨설팅, 개선지원이 필요한 기업
- ✓ 인지도가 낮아 고민인 기업 등

###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A기업

#### 인사노무 컨설팅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를 통해 창립 이후 처음으로 임금·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직원들의 근무만족도가 높아졌어요.



B기업

#### 맞춤인재양성

기업의 수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컨설팅해주어 직원의 업무역량이 향상됐어요.



C기업

#### 인프라개선

작업환경의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으로 근무환경이 좋아졌어요.



D기업

#### 인지도확산

고용센터 SNS에 회사전경, 구인광고도 올려주고 홍보물 제작을 도와주어 인지도가 올라갔어요.

**감사합니다.**